예금성상품 계약서

(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, 적립식예금, 거치식예금(시장성), 주택청약관련예금)

※ 본 계약서는 예금상품 설명/가입 권유에 따라 작성한 서류에 의거 작성되었으며, 계약확인을 위한 서류입니다.

[예금상품 계약사항]

| 예금주 | 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 | 신규 961205249051 <mark>7 (상품전</mark> | |
|------------------|--|--|---------|
| 구분 | 1. 계약상품 | 2. 계약상품 | 3. 계약상품 |
| 상품명 | 하나메디세이브 라식 목표적 | 검금 | |
| 계좌번호 | 1829124245725 | | |
| 계약기간 | 12개월 | | |
| 적용금리 | 3.00% (세전) | | |
| 과세구분 | 일반과세 | | |
| 약관/설명서 (수령방법) | 이메일 | | |

- ※ 상기 계약사항의 적용금리는 현재시점 기준이며, 실제 기본(우대)이율의 적용은 제공받으신 약관, 상품설명서에 따릅니다.
- ※ 연계·제휴서비스 등은 해당 상품의 약관, 상품설명서에 따릅니다.

[고객 참고사항(공통)]

□ 위법계약해지권 안내

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7조,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당행과의 예금 계약 체결 시 동법 상의 설명 의무 위반 또는 금지되는 불광정영업행위, 부당권유행위의 발생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,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체결일(계약서류 수령일)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, 전화,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당행은 위법계약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손님에게 해당 해지 요구에 대한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.

□ 민원처리 절차 및 분쟁조정 안내

상품 가입 후 의문사항이나 민원이 있으신 경우 하나온행 소비자보호센터(1599-1111, 1588-111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(www.kebhana.com)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, 인터넷 홈페이지 www.fss.or.kr)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
- ※ 상기 체결한 예금상품의 세부적인 내용은 제공 받으신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궁금하신 내용은 직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확히 작성되었으며, 계약서를 제공받지 않을 경우 추후 권리행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받았으며, 계약서 은행용 1부는 은행이 보관하고 고객용 1부는 본인이 제공 받았음을 확인합니다.

2024 년 10월 09일

| 계약 확인 | 신규 영업점 | 하나금융TI | 지점 | 예금주 | >> > > | (인/서명) |
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|--------|---|--------|
| | | ®02-2151-64 | .00 | 신규 직원명 | 김하나 | (인/서명) |

※ 본 계약서는 '21,3,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제정된 서양식입니다.



